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제80조(이행강제금)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『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』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폐문부재 등)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17. 12. .

포 항 시 남 구 청 장

1. 처분제목 :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
2. 법적근거 : 「건축법」 제80조(이행강제금)
3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연번	건축주	위반내용	처분내용	반송주소	반송사유
1	허*암	위반건축물	이행강제금 부과	포항시 남구 운하로 2*7-7	폐문부재
2	허*대	“	“	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5*번길 10, 10*동 1*03호	“
3	허*대	“	“	포항시 남구 운하로 20*	“

4. 공고기간 : 2017. 12. 28. ~ 2018. 01. 11.(15일간)
5. 공고방법 :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
6. 기타사항
 -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,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7. 문의사항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(☎ 054-270-649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